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의 안 번 호 6929

제안연월일: 2024. 12.

제 안 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순번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심사경과
12 12	760	7 6 6 4	(제출자)	(제출일)	H-1-8-1
1		2201613	박정의원	2024. 7. 11.	제418회국회(정기회) 제3차 전체회의
	전통시장 및				(2024. 9. 26.)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상점가 육성을			소위원회 회부	
2	위한 특별법	2202997	서일준의원	0004 0 00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전체회의
					(2024. 11. 20.)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20.	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중소벤처기업
					소위원회 회부

- 가.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2024. 11. 22.)에서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나.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0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4. 11. 28.)에서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중소 벤처기업소위원회가 마련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정부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몰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별로 영업률이 극심한 편차를 보이는 등 현행 지원제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상인에 대해 전주기적,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 가.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벤처기 업부장관이 청년상인 육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및 제71조).
- 나. '전주'를 '전봇대'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

- 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2조의 제목 중 "전주"를 "전봇대"로 한다.
-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u>정부와</u>	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u>①</u>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	
<u>상인의 육성을 위하여 청년상</u>	
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을 추진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 설></u>	4.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u>지원</u>
<u>4.</u> (생 략)	<u>5.</u> (현행 제4호와 같음)
<u><신 설></u>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
	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을
	<u>지정할 수 있다.</u>
<u><신 설></u>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
	기관(이하 이 조 및 제71조에
	서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중소
	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u>사업</u>
	2.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u>지원</u>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2조(전주이설비용 부담에 관 제22조(전봇대이설비용 부담에 한 특례) (생 략)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 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 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 은 경우
- 2. 제7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 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 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 ⑦ 전문기관의 지정・운영, 지 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관한 특례)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제71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
	조제1항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